

인천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가단229468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진

담당변호사 장근석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조병학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태영

변 론 종 결 2023. 7. 12.

판 결 선 고 2023. 8. 9.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24.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2021. 9. 27. 접수 제39067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과 사이에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에게 대출을 하여 주었고, 2023. 3. 28. 기준 C에 대하여 대출원리금 합계 210,944,447원 상당의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대출일	만기일	대출금액	대출잔액	연체원리금
①	2017.8.29	2022.8.29	130,000,000	129,999,361	136,775,359
②	2017.10.30	2022.10.30	30,000,000	19,998,839	21,199,864
③	2020.9.14	2022.9.14	50,000,000	50,000,000	52,969,224
	합 계		210,000,000	199,998,200	210,944,447

나. 피고는 2021. 9. 24. 당시 위와 같은 대출금채무 등으로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피고의 부친인 C과 사이에 C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그에 기하여 2021. 9. 27. 인천지방법원 등기국 접수 제3906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C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대출금채권은 사해행위에 대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채무초과의 상태에 빠져 있던 C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것은 채무자인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고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의 부족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게 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C이 장모인 소외 D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은 다음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증여자는 채무자인 C이 아닌 피고의 외할머니인 D여서 C의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사해행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판단을 뒤집고 피고의 위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자가 채무자인 C이 아닌 피고의 외할머니인 D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피고의 선의 주장에 관한 판단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증여계약이 C의 채권자들을 해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는 듯하나, C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재정상황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C은 부녀지간이므로 피고는 C의 재산 및 채무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계에 있었는데, C의 재산을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 추정을 번복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앞서 살핀 바에 의하면,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범진

별 지 목 록

1. 1동의 건물의 표시

인천광역시 서구

빌라

동

[도로명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다세대주택

1층82.38㎡

2층82.38㎡

3층82.38㎡

지층82.38㎡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지하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36.51㎡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인천광역시 서구

대 413.2㎡

대지권의종류 : 1. 소유권

대지권의비율 : 1. 413.2분의 25.83

